

벤엘교회 헌법 및 규약
(수정안 대조본)

현 행	<u>수정안 1.3 (2018. 10. 17.)</u>
<p>교회 헌법</p> <p>제 1 장 명칭과 위치</p> <p>제 2 장 교회의 정의와 목적</p> <p>제 3 장 교리</p> <p>제 4 장 교회 체제</p> <p>제 5 장 교인</p> <p>제 6 장 교회직분과 정년</p> <p>제 7 장 헌법 수정</p> <p>교회 규약</p> <p>제 1 장 교인총회</p> <p>제 2 장 당회</p> <p>제 3 장 제직회</p> <p>제 4 장 이사회</p> <p>제 5 장 교회재산</p> <p>제 6 장 목사 및 기타 목회자</p> <p>제 7 장 장노, 권사, 집사</p> <p>제 8 장 당회 직할기관</p> <p>제 9 장 교회 부속기관</p> <p>제 10 장 교회 부속단체</p> <p>제 11 장 단체기관 및 부서의 임원 임기</p> <p>제 12 장 단체기관 및 부서의 사업 및 재정보고</p> <p>제 13 장 규약 수정</p> <p>제 14 장 부칙</p>	<p>제 5 장 감사</p> <p>제 8 장 장로</p> <p>제 9 장 권사</p> <p>제 10 장 집사</p> <p>제 11 장 직분자의 선출 및 임기</p> <p>제 12 장 교회 직할기관</p> <p>제 13 장 교회 부설기관</p> <p>제 14 장 부속단체</p> <p>제 15 장 단체기관 및 부서의 임원 임기</p> <p>제 16 장 단체기관 및 부서의 사업 및 재정보고</p> <p>제 17 장 규약 수정</p> <p>제 18 장 부칙</p>
벤엘교회 헌법	벤엘교회 헌법
<p>제 1 장 명칭과 위치</p> <p>제 1 조 본교회의 명칭은 「벤엘교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한다. 본교회 위치는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aryland 21043 에 위치한다.</p>	<p>제 1 장 명칭과 위치</p> <p>제 1 조 본교회의 명칭은 「벤엘교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한다. 본교회 위치는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aryland 21042 에 위치한다.</p>
<p>제 2 장 교회의 정의와 목적</p> <p>제 2 조 정의</p> <p>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유기체인 몸과 비유된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과 같아서 머리되신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p> <p>제 3 조 목적</p>	

<p>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하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자기 교회에 계속하라고 명하신 그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이시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사랑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도록 지시하셨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요, 둘째는 나 외의 다른 기독교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한다.</p> <p>(1) 예배하는 생활 여러가지 예배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찬송, 기도, 헌금 및 말씀증거를 드리고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임을 밝혀 둔다.</p> <p>(2) 친교하는 생활 신앙인들 사이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는데 이 하나됨을 계속 육성, 유지해야 한다. 몸의 각 지체인 우리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부분들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서로 협조하고 의존하는 것과 서로 돌보아 줌을 반드시 배워 실행한다.</p> <p>(3) 선교하는 생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말한다. 온 교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간증과 복음전도에 충력을 기한다.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p> <p>(4) 교육하는 생활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신앙인의 영적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살게 한다(마태복음 28:19-20; 사도행전 2:42; 에베소서 4:11-16).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증가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생활의 개발에 있다.</p> <p>(5) 봉사하는 생활 교회는 예수님 생애의 본을 따라 온 교우들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책임과 특권이 있다. 교회와 교계를 섬길 뿐 아니라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에도 봉사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된다. 특히 교회내에서 발견되는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편다.</p>	
<p>제 3 장 교리</p> <p>제 4 조 본교회가 영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 장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요리 및 소요리문답은 성경에 명시된 교리에 합의되는 한 따르기로 한다.</p>	<p>제 3 장 교리</p> <p>제 4 조 본 교회가 영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u>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요리 및 소요리 문답을 따르기로 한다.</u></p>
<p>제 4 장 교회 체제</p>	

<p>제 5 조 체제 교회는 장로교회 체제를 채택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며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 한다.</p> <p>제 6 조 운영 근거 모든 회의와 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베델교회 헌법과 규약에 의한다.</p>	
<p>제 5 장 교인</p> <p>제 7 조 교회의 교인은 본교회의 교리와 체제 및 치리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조직된 신앙인들과 그 가족으로 구성한다.</p> <p>(1) 정교인 정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앙문답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자와 입교한 자로 만 18 세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회에 공포된 자로 한다. 정교인은 신앙고백을 통해서나 이단시되지 않는 타교회로부터 이적하여 오는 이명서를 통해서 될 수 있으나 이명서가 없을 때는 당회가 본인에게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신앙고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본교회의 정교인을 필요시 당회의 결정으로 복음적인 타 교회로 교적부를 이명해 줄 수 있다.</p> <p>(2) 준교인 준교인은 본교회 정교인의 자녀와 법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과 타교회 교인으로서 모교회에서 임시 떠나와 있는 신앙인들로서 당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p> <p>제 8 조 자격상실 정교인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이상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정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p>	
<p>제 6 장 교회직분 및 정년</p> <p>제 9 조 본교회 직분에는 목사, 장노, 권사, 집사 및 전도사가 있으며 장노, 권사, 집사는 65 세를 정년으로 하고, 목회자는 65 세에 자원 은퇴할 수 있으나 70 세를 정년으로 한다.</p>	<p>제 6 장 교회직분 및 정년</p> <p>제 9 조 본 교회 직분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및 전도사가 있으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65 세를 <u>시무정년</u>으로 한다.</p>
<p>제 7 장 헌법 수정</p> <p>제 10 조 본 헌법은 교인총회 재석 2/3 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공고와 수정항목은 총회 2 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p> <p>제 11 조 본 수정헌법은 주후 1989 년 1 월 1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p>	<p><u>제 11 조</u> <u>(1) 본 수정헌법은 주후 1989 년 1 월 1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u></p> <p><u>(2) 본 2 차 수정헌법은 주후 2018 년 11 월 _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의 모든 수정안을 대체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베델 교회 규약</p>	<p style="text-align: center;">베델 교회 규약</p>

<p>제 1 장 교인총회</p> <p>제 1 조 회원자격 정교인으로 회원을 구성한다.</p> <p>제 2 조 권한 (1) 목사청빙 및 해임 (2) 직분자 선출, 기관임원 선출 및 인준 (3) 교회 전체 사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 (4) 결산 및 예산 의결 (5) 부동산 주요변경에 대한 인준 (6) 헌법과 규약심의 및 인준 (7) 기타</p> <p>제 3 조 회의 (1) 회계년도를 1 월 1 일부터 12 월 말까지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 월중(예산, 기관임원선출 및 인준 등)과 3 월중(사업보고, 결산 및 직분자 선출 등) 2 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당회나 제직회의 요구 또는 재적교인 3 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소집하며 제안, 공고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4) 교인총회는 소집 2 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총회 성원은 재석으로 한다. (6) 회의 진행방법은 로버트 회의진행법(Robert's Rule of Order)에 따른다.</p>	<p>(3) 임시총회는 당회나 제직회의 요구 또는 정교인 3 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소집하며 제안, 공고된 안건만을 처리한다.</p> <p>(6) 회의 진행방법은 로버트 회의진행법(Robert's Rules of Order)에 따른다.</p>
<p>제 2 장 당회</p> <p>제 4 조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노들로 구성한다.</p> <p>제 5 조 임무 당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찰 아래 전체교인의 영적 생활과 제반 교회업무를 총괄하는 의무를 갖는다. 당회는 교회의 모든 정책수립 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이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단체 및 교회 직원은 당회의 관할하에 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례: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교적: 당회는 교인의 교적을 관장하고 이명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3) 예배: 당회는 예배와 특별집회를 주관한다. (4) 감독: 당회는 모든 소속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5) 임직: 당회는 장노, 집사, 권사를 임직하며 규약에 정한 직분자와 기관의 임원을 추천, 임명, 선출한다. (6) 헌금: 당회는 각종 헌금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케 하며 모든 재산과 재정을 관장한다. (7) 권징: 당회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적,</p>	<p>제 4 조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한다.</p> <p>(5) 임직: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며 규약에 정한 직분자와 기관의 임원을 추천, 임명, 선출한다. (6) 재정: 당회는 각종 헌금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케 하며 모든 재산과 재정을 관장한다.</p>

<p>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언행이 있을 경우 이를 성경의 교훈에 따라 권징할 수 있다.</p> <p>(8) 임시위원회: 모든 임시위원회는 당회에서 구성, 관할하며 임기설정은 당회에서 한다.</p> <p>(9) 이사추천: 당회는 총회에 당회원과 시무집사 중에서 이사를 추천한다.</p> <p>(10) 직분자보선: 당회는 공석이 된 직분자를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될 직분자(장노, 집사 및 권사)의 자격은 과거 본교회 해당직분에 취임했던 자라야 하고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p> <p>(11) 직할기관: 당회는 주일학교, 구역회, 성가대, 교회교육협의회, 새가족위원회를 직접 관장 한다.</p> <p>제 6 조 서기</p> <p>(1) 당회는 회원중에서 매년 서기를 선출하여 당회록, 교인총회록을 기록, 보존케 하며 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책별 및 해별교인, 실종교인, 이명교인, 혼인, 별세, 세례, 안수 명부 등을 기록 보존하며 교인총회가 지시한 모든 서류 등을 보존, 관리한다.</p> <p>(2) 당회장 유고시는 서기가 회의를 관장한다.</p>	<p>(10) 직분자보선: 당회는 공석이 된 직분자를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될 직분자(장로, 집사 및 권사)의 자격은 <u>본교회 직분자로 하고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u></p> <p>(11) 직할기관: <u>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기관을 둘 수 있다.</u></p> <p>제 6 조 서기</p> <p>(1) 당회는 회원 중에서 매년 서기를 선출하여 당회록, 교인총회록을 기록, 보존케 하며, <u>교인, 유아세례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실종교인, 이명교인, 혼인, 별세, 책별, 해별 명부 및 안수 명부 등을 기록 보존하며 교인총회가 지시한 모든 서류 등을 보존 및 관리한다.</u></p>
<p>제 3 장 제직회</p> <p>제 7 조 구성</p> <p>제직회는 목사, 시무중인 장노, 권사, 집사, 교구장,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하고 휴무장노, 기타 목회자(전문직 목회자 및 전도사) 및 1년 경과된 전입장노는 당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p> <p>제 8 조 임무</p> <p>(1) 제직회는 당회와 교인총회가 지정 및 요청하는 교회의 제반 사업과 계획을 실천하는 봉사기관으로서 각 분야의 업무보고, 정보교환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반 교회사업의 균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p> <p>(2) 제직회는 당회에서 통과한 예산, 결산안을 심의, 결의한다.</p> <p>(3) 제직회는 총회선출 장노후보를 당회에 배수 추천한다(단, 후보추천자가 배수에 미달될 때는 추천된 실제 수로 한다).</p> <p>(4) 제직회는 제반 사업에 대한 건의를 의결하여 당회와 교인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 9 조 임원</p> <p>(1) 제직회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p> <p>(2) 총무는 회원 중에서 제직회가 선출하며 의장과 함께 제직회 운영의 원활을 도모한다.</p> <p>(3) 서기는 회원 중에서 제직회가 선출하며 모든 기록과 보존을 담당한다.</p> <p>(4) 회계 가. 회계는 현금과 기타 수입을 접수, 계수, 기록하여 이를</p>	<p>제 3 장 제직회</p> <p>제 7 조 구성</p> <p>(1) 제직회는 목사, 시무 및 사역장로, 권사, 시무 집사, <u>교구장,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한다.</u></p> <p>(2) <u>기타 목회자 (전문직 목회자 및 전도사) 및 1년 경과된 타교회에서 임직한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u></p> <p>(3) 제직회는 총회선출 장로후보를 당회에 배수 추천한다(단, 후보추천자가 배수에 미달될 때는 추천된 실제 수로 한다).</p>

<p>재무 또는 부재무에게 즉시 인계한다. 나. 당회나 재무는 회계의 모든 기록 장부를 필요시에 따라 검열할 수 있다. 다. 회계의 유고시는 당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무가 자동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며 관장해야 한다. 라. 회계는 당회가 추천, 총회가 선출하며 당회는 최소 3 명의 부회계를 임명하여 회계를 돕도록 해야 한다. (5) 감사는 당회가 추천, 총회가 선출하며 당회는 최소 3 명의 부감사를 임명하여 감사를 돕게 한다. 감사는 재무 및 행정감사를 년 2 회(2 월, 10 월)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감사를 할 수 있다. (6) 의장 유고시는 당회 서기가 회의를 관장한다.</p> <p>제 10 조 부서 (1) 부서장과 부원은 당회가 임명하고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하며 서기를 선출하여 모든 기록유지와 보조를 담당하도록 하고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록을 제시해야 한다. (2) 부서에는 건물관리부, 공보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차량부, 친교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당회가 신설할 수 있다.</p> <p>제 11 조 제직회 소집 (1) 정기제직회는 매 2 개월 마다 소집한다. (2) 임시제직회는 의장 또는 회원 3 분의 1 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서기는 제직회 소집 1 주일 전에 서면으로 공고해야 하며 임시 제직회 소집시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 제직회 소집시는 예외로 한다).</p>	<p>[(5) 항을 제 5 장 제 16 조로 이동]</p> <p>[제 10 조 삭제]</p> <p>제 10 조 제직회 소집 및 성원</p> <p><u>(4) 제직회 성원은 전체 재적의 1/3 이상으로 하며 의결권은 재적의 과반수로 하되 그 과반수는 전체 재적의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u></p>
<p>제 4 장 이사회</p> <p>제 12 조 구성 (1) 이사회는 4 명 이상의 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담임목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2) 이사는 당회원과 시무집사 중에서 당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당회에서 인준한다. (단 임원은 당회원으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수의 증감을 당회에 요청한다.</p> <p>제 13 조 임무 (1) 이사회는 주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체로써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법적 등기를 책임진다. (2) 이사회는 교회의 동산, 부동산, 교회 재정 등 교회의 재산을 총관리한다. (3) 이사회는 주정부가 법인체에 부여한 기타 직무를</p>	<p>제 11 조 구성</p> <p>제 12 조 임무</p>

<p>수행한다.</p> <p>(4) 이사회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된 예산을 집행한다.</p> <p>(5) 이사회는 결산보고를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p> <p>제 14 조 임원</p> <p>(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 재무 및 부재무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p> <p>(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p> <p>(3) 이사장은 법인체의 법적 수취인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p> <p>(4) 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에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p> <p>(5) 총무는 법인체의 모든 서류를 보관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정리, 보관하며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모든 법적인 서류에 이사장과 함께 공동 서명한다.</p> <p>(6) 재무</p> <p>가.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며 회계로부터 입금된 재정을 접수받고 당회가 허락한 은행에 매주 1 회 입금시키는 책임을 갖는다.</p> <p>나. 부재무와 타 이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입금 증서를 필히 재무에게 제출하도록 한다.</p> <p>다. 교회 재정보고는 이사회를 거쳐 정기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해야 한다.</p> <p>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사회, 당회, 제직회를 거쳐 교인총회에 제출하며 모든 재정관계 서류는 당회의 요청시 언제든지 제시되어야 한다.</p> <p>제 15 조 회의</p> <p>(1) 이사회는 담임목사, 이사장, 또는 이사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갖는다.</p> <p>(2) 이사회는 재적 2/3 로 성원되며 재석 과반수 안전을 처리한다.</p> <p>제 16 조 제한</p> <p>이사회는 총회의 승인 없이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라도 매매, 저당, 임대차 또는 이전 할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임대차만은 당회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 13 조 임원</p> <p>나. <u>타이사가</u>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입금 증서를 필히 재무에게 제출하도록 한다.</p> <p>제 14 조 회의</p> <p>제 15 조 제한</p>
	<p>제 5 장 감사</p> <p>제 16 조 감사는 당회가 추천, 총회가 선출하며 당회는 <u>최소 3 명의 부감사를 임명하여 감사를 돕게 한다. 감사는 재무 및 행정감사를 년 2 회(2 월, 10 월)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감사를 할 수 있다.</u></p>
<p>제 5 장 교회 재산</p> <p>제 17 조 본교회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교회 재정을 말하며 메릴랜드 주법에 따라 이사회 관할하에 두나 재산의 처리 및 매매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p>	<p>제 6 장 교회 재산</p>

<p>한다. 본교회의 재산은 교인, 외부단체 및 개인의 헌납으로 한다. 본교회의 재산 수취인은 이사장으로 한다.</p>	
<p>제 6 장 목사 및 기타 목회자</p> <p>제 18 조 직무 (1)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당회와 함께 교인의 영적생활의 총괄과 예배의 주관, 성례주관, 장노, 권사, 집사의 안수와 임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회를 비롯한 교회 모든 기관의 당원회원이 되며 당회, 제직회, 교인총회의 의장이 된다. 목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2)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당회가 부여한 선교, 교육, 상담 및 기타 목회에 필요한 사역과 목회업무를 수행하며 담임목사 부재시에는 담임목사의 위임사항 한계내에서 담임목사 업무를 당회와 협의하여 대행한다. 부목사는 당회의 특별회원이 되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p> <p>제 21 조 청빙 (1) 교회가 목사청빙을 필요로 할 때 당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수락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석 3/4 의 동의로 결정한다. (3) 같은 교인총회는 한 후보만 투표한다.</p> <p>제 22 조 임기 및 안식년 (1) 담임목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부목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당회에서 3 년마다 목회실적을 검토한다. (3) 목사는 계속 매 6년 시무한 후 7년째 1년을 안식년으로 한다. 시무연한은 소급하여 가산한다. (1989년 4월 1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p> <p>제 23 조 기타 목회자 (1) 교회의 목회에 필요한 기타 목회자(전도사, 전문직 등)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 및 해임할 수 있다. (2) 전임 전도사는 당회의 특별회원이 되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p>	<p>제 7 장 목사 및 기타 목회자</p> <p>제 18 조 직무 (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당회와 함께 교인의 영적생활의 총괄과 예배의 주관, 성례주관, 장로, 권사, 집사의 안수와 임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회를 비롯한 교회 모든 기관의 당원회원이 되며 당회, 제직회, 교인총회의 의장이 된다. 목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2) 부목사 가.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당회가 부여한 목회 사역을 수행하며, 담임목사 부재시 담임목사의 위임사항 한계 내에서 담임목사의 업무를 당회와 협의하여 대행한다. 부목사는 당회의 특별회원이 되어 발언권을 가지되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나.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결정으로 임명한다.</p> <p>제 19 조 담임목사 청빙 (1) 교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필요로 할 때 당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다.</p> <p>제 20 조 임기 (2) 부목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당회에서 4년마다 재인준할 수 있다. [(3) 항 삭제]</p> <p>제 21 조 안식년 담임 목사는 계속 매 6년 시무한후 7년째 1년 혹은 매 3년 시무한 후 6개월을 안식년으로 하며 안식년의 시기는 당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22 조 기타 목회자</p>
<p>제 7 장 장노, 권사, 집사</p>	<p>제 8 장 장로</p> <p>제 23 조 장로의 구분 (1) 시무장로: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p>

<p>제 24 조 장로의 임무 장로는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 당회원이 된다.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의 영적향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보살펴야 하며 교인들의 교리와 생활이 성경적으로 성숙해 지도록 돌보는 책임을 진다. 장로는 선포된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병자를 돌보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약한 자를 위로하고, 교인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전교인, 특히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임무를 갖는다.</p> <p>제 25 조 장로의 자격 본교회 정교인, 35 세 이상의 남자로 선거 전까지 본교회 정교인으로 3년이 경과되고 교회 직분을 최소 4년 역임한 자로 디모데전서 3 장 1 절~7 절과 디도서 1 장 5 절~9 절에 해당되며 신앙과 인격과 영적 사역에 모범적인 자라야 한다.</p> <p>제 26 조 권사의 임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목회자를 도와 교회에 덕을 세우며 교인들의 영적 생활이 향상되도록 힘쓴다. 교인을 심방, 위로,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임무를 갖는다.</p>	<p>당회원이 된다. (2) 사역장로: 본교회의 시무 혹은 휴무 장로로서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임명한다. 사역장로는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3) 협동장로: 타교회에서 임직한 장로로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임명한다. 협동장로는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4) 은퇴장로: 본 규약의 은퇴 연령기준에 의하여 은퇴한 자로 한다. (5) 원로장로: 당회는 은퇴장로 중 당회 결의에 의해서 원로장로를 추대할 수 있다.</p> <p>제 24 조 장로의 임무 (1) 시무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의 영적향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보살펴야 하며 교인들의 교리와 생활이 성경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돌보는 책임을 진다. (2) 사역장로는 교회의 제반 사역과 교구 사역을 담당한다. (3) 협동장로는 교구 사역을 담당한다. (4) 은퇴장로는 당회의 요청에 의하여 교구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p> <p>제 25 조 장로의 자격 (1) 시무장로는 본 교회 집사로 5년 이상 시무한 40 세 이상의 남자로, 신앙과 인격과 영적 사역에 모범이 되며,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딤후전 3:1-7, 딤후 1:5-9). (2) 협동장로는 타교회에서 임직한 장로로 본 교회 정교인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되, 신앙과 인격과 영적 사역에 모범이 되며,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딤후전 3:1-7, 딤후 1:5-9). (3) 은퇴장로는 본 규약의 은퇴 연령기준에 의한다. (4) 원로장로는 시무장로로 피택되어 20년 이상 헌신봉사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추대한다.</p> <p>제 9 장 권사</p> <p>제 26 조 권사의 구분 (1) 시무권사는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며 교회 제반 사역과 성도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다. (2) 은퇴권사는 본 규약의 은퇴연령의 해에 은퇴한 권사를 말한다.</p> <p>제 27 조 권사의 임무 (1)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목회자를 도와 교회에 덕을 세우며 교인들의 영적 생활이 향상되도록 힘쓴다. (2)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제반 사역에 봉사하고, 교인을 심방, 위로,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임무를 갖는다.</p>
--	--

제 27 조 권사의 자격

45 세 이상의 여자로서 선거 전까지 본교회 정교인으로 3 년 이상 경과되고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 28 조 집사의 임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봉사자로서 제직회원이 되며 성경에 제시된 교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함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사역을 담당하고 집행한다. 모든 예배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일들, 교인간의 사랑의 친교, 계획과 실천, 대내외 선교에 필요한 실무, 신앙과 성경교육 훈련에 관한 사역, 구제와 사회봉사를 위한 제반사업진행, 교회의 현금수납, 동산, 부동산 및 교회의 재산의 관리, 보존의 의무를 갖는다.

제 29 조 집사의 자격

27 세 이상된 본교회 정교인으로 선거 전까지 1 년이 경과되고 디모데전서 3 장 8 절~13 절과 사도행전 6 장 1 절~6 절에 해당되며 신앙과 생활에 모범적인 자라야 한다.

제 30 조 교회 직분자 선출

교회의 직분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시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 31 조 교인총회에서 선출할 직분자

장노, 권사, 집사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 28 조 권사의 자격

(1) 권사는 본 교회 집사로 3 년 이상 시무한 45 세 이상의 여자로서,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며,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딤후 3:11, 딤후 2:3-5).

(2) 타교회에서 취임권사의 직분을 받은 자의 선출은 동법 28 조 (1)항을 적용하여 본교회 3 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제 10 장 집사

제 29 조 집사의 구분

(1) 시무집사: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되며 교회 제반 사역과 성도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다.

(2) 은퇴집사: 본 규약의 은퇴연령기준에 의한다.

(3) 명예집사: 당회는 결의에 의해서 명예 집사를 추대할 수 있다.

제 30 조 집사의 임무

(1) 시무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봉사자로서 제직회원이 되어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봉사하며, 교회의 제반 사역을 담당하고, 성도를 심방, 위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임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예배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일들, 교인 간의 사랑의 친교, 계획과 실천, 대내외 선교에 필요한 실무, 신앙과 성경교육 훈련에 관한 사역, 구제와 사회봉사를 위한 제반사업 진행, 교회의 현금수납, 및 교회의 재산의 관리, 보존의 의무를 갖는다 (행 6:1-3).

(2) 은퇴/명예집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양한 사역에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슬픔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낙심한 성도를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임무를 갖는다.

제 31 조 집사의 자격

(1) 시무집사는 본교회 정교인으로 3 년이 경과한, 35 세 이상의 남녀로, 신앙과 인격과 영적 사역에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딤후 3:8-13).

(2) 은퇴집사는 본 규약의 은퇴연령기준에 의하며 은퇴한 집사로 한다.

(3) 당회는 70 세 이상으로 본교회 출석 10 년 이상 된 성도를 명예집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1 장 직분자의 선출 및 임기

제 32 조 직분자의 선출

교회의 직분자(장로, 권사, 집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필요에 따라 당회가 결의하여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31 조 삭제]

<p>선출한다.</p> <p>제 32 조 선출 절차 (1) 당회는 제직회에서 장노후보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동참할 마음에 대한 다짐을 확인하고 총회에 제출한다. (2) 휴무장로는 총회에서 신임을 물어 안식년을 가진 후에 당회원으로 시무한다. (2010년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3) 당회는 직분자 후보를 1월중에 심의를 시작하여 2월말까지 결정해야 한다.</p> <p>제 33 조 수련과정 장노, 권사 및 집사로 선출된 자는 [교회 직분자의 수련과정]을 당회 주관하에 필해야 한다. 이 수련과정을 통하여 교리, 교회의 권위, 직분자의 자격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한다.</p> <p>제 34 조 시무 연한 (1) 장노와 집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장노와 집사는 같은 직분에 연임할 수 없다 (단, 1년이상 안식년을 가진 후에는 재시무할 수 있다.)</p> <p>제 35 조 직분자 정원 장노, 권사, 집사의 정원은 당회의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다.</p> <p>제 36 조 투표방법 모든 직분자에 대한 투표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되 장노는 재석 3분의 2 이상, 그외의 직분자는 과반수로 한다.</p>	<p>제 33 조 교인총회를 통한 직분자의 선출 (1) 신임 시무장로는 당회에서 정한 후보자 수(정수)에 따라서, 집사 및 협동장로 중 제직회에서 배수 후보를 선정하고 당회에서 자격을 심사한 후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동참할 마음에 대한 다짐을 확인하고 정수 이내의 후보를 공천하여 교인총회에서 선출한다. (2) 권사는 당회에서 자격을 심사한 후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동참할 마음에 대한 다짐을 확인하고, 정수 이내의 후보를 공천하여 교인총회에서 선출한다. (3) 신임 집사는 당회에서 자격을 심사한 후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동참할 마음에 대한 다짐을 확인하고, 정수 이내의 후보를 공천하여 교인총회에서 선출한다.</p> <p>제 34 조 수련과정 장노, 권사 및 집사로 선출된 자는 직분자의 수련과정을 당회 주관하에 필해야 한다. 이 수련과정을 통하여 교리, 교회의 권위, 직분자의 자격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한다.</p> <p>제 35 조 시무 연한 (1) 시무장로와 집사의 시무연한은 3년으로 하며 1년이상 안식년을 가진 후에 교인총회의 투표를 통하여 재시무할 수 있다. (2) 권사의 시무연한은 본 규약의 은퇴연령까지로 한다.</p> <p>제 36 조 직분자 정원 장노, 권사, 집사의 정원은 당회의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다.</p> <p>제 37 조 투표방법 (1) 신임 시무장로는 제직회에서 1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배수 선정하여, 2차 투표에서 재석의 2/3 이상 또한 동시에 전체 재석의 1/3 이상을 득표할 시 배수후보로 선출한다. (2) 권사와 집사 후보는 당회에서 정수 이내의 후보를 교인총회에 직접 추천한다. (3) 교인총회는 당회가 추천한 직분자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장로는 재석 3분의 2 이상, 그 외의 직분자는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p>
<p>제 8 장 당회 직할 기관</p> <p>제 37 조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교인 전체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신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교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p> <p>제 38 조 구역회</p>	<p>제 12 장 교회 직할 기관</p> <p>[제 37 조 삭제]</p> <p>[제 38 조 삭제]</p>

구역회는 전교인을 구역과 교구로 조직, 운영하고 구역원과의 상호 친목, 예배, 성경공부, 연락 등을 통하여 신앙성장을 도모한다. 구역회장은 당회가 임명한다.

제 39 조 성가대

성가대는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도우며 각종 음악활동과 교인들의 찬송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성가대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40 조 교회교육협의회

본회는 교회내의 모든 교육기관의 상호 협조와 기본적 교육 정책과 대한 협의를 하는 기관으로 회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 41 조 새가족 위원회

새가족 위원회는 새가족이 처음 올 때부터 안정되어 본교회의 열성있는 교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위원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 39 조 삭제]

[제 40 조 삭제]

[제 41 조 삭제]

제 38 조 사역원

본 교회는 사역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예배사역원, 교육사역원, 섬김사역원, 가정사역원, 관리사역원 등을 두며, 사역원의 설립과 폐지는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1) 사역위원회 및 위원

가. 각 사역원은 2 인 내외의 사역장로가 사역위원회를 담당하며, 담당목사와 각 부서장과 함께 사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원 내의 사역과 행정을 관리한다.

나. 사역위원회는 사역원 산하 부서의 계획된 사역과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사역과 예산의 집행은 당회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사역위원회는 매월 (혹은 짝수월) 사역원의 사역내용, 재정지출 현황 등을 당회에 보고한다.

라. 사역원 담당장로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차를 두어 사역의 연계성을 도모한다.

(2) 부서 및 부서장

가. 각 사역원은 산하 부서를 두어 사역을 담당하게 하되, 정기적인 사역원 회의를 통해서 부서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나. 부서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하며 서기를 선출하여 모든 기록유지와 보존을 담당하도록 하고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록을 제시해야 한다.

다. 부서의 신설 및 폐지는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사역팀 및 팀장

가. 사역 부서는 산하에 사역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팀의 신설 및 폐지는 사역원의 심의를 거쳐 당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는다.

나. 팀장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사역원장이 임명하며, 당회에 보고한다.

<p>제 9 장 교회 부속 기관</p> <p>제 42 조 <u>벤엘출판사</u> 교회는 부속기관으로 <u>벤엘출판사를 두어 출판사 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발행인은 당회가 임명한다.</u></p> <p>제 43 조 <u>벤엘한국학교</u> 교회는 부속기관으로 <u>벤엘한국학교를 두어 학교 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이사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u></p> <p>제 44 조 <u>벤엘카셋선교회</u> 교회는 부속기관으로 <u>벤엘카셋선교회를 두어 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회장은 당회가 임명한다.</u></p> <p>제 45 조 <u>세계선교센터</u> 교회는 세계선교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세계선교센터를 세워 대내, 대외의 모든 선교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며 <u>사무총장을 당회에서 임명한다.</u></p> <p>제 46 조 <u>벤엘방송선교회</u> 교회는 방송선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u>벤엘방송선교회를 두어 방송선교에 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회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u></p> <p>제 47 조 <u>벤엘신학원</u>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벤엘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교회의 사역자를 훈련, 양성한다. 신학원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u></p>	<p>제 13 장 교회 부설 기관</p> <p>제 39 조 <u>벤엘출판사</u> <u>교회는 부속기관으로 벤엘출판사를 두어 출판사 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발행인과 편집인은 당회가 임명한다.</u></p> <p>제 40 조 <u>벤엘한국학교</u> 교회는 부속기관으로 <u>벤엘한국학교를 두어 학교 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교장과 이사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u></p> <p>[제 44 조 삭제]</p> <p>제 41 조 <u>세계선교센터</u> 교회는 세계선교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세계선교센터를 세워 대내, 대외의 모든 선교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며 <u>소장과 이사는 당회에서 임명한다.</u></p> <p>[제 46 조 삭제]</p> <p>제 42 조 <u>벤엘시니어아카데미</u> <u>교회는 벤엘시니어아카데미를 두어 시니어들의 건강, 친교, 교육, 신앙을 증진하고, 교장과 이사는 당회에서 임명한다.</u></p> <p>제 43 조 <u>벤엘신학원</u></p> <p>제 44 조 <u>부설기관의 신설 및 폐지</u> <u>교회 부설기관의 신설 및 폐지는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u></p>
<p>제 10 장 부속단체</p> <p>제 48 조 <u>교회는 아래와 같은 부속단체를 두어 당회의 승인으로 신설, 통합, 폐쇄할 수 있다. 신생선교회, 제 1 여전도회, 마리아선교회, 바나바선교회, 바울선교회, 디모데선교회, 두란노선교회, 청년회, 빛과소금회, 학생회 등.</u></p>	<p>제 14 장 부속단체</p> <p>제 45 조 <u>선교회</u> <u>교회는 부속단체로 남녀 선교회를 두어 교회내 친교와 봉사, 회원간의 교제와 영적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선교회는 당회의 승인으로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u></p>
<p>제 11 장 단체 기관 및 부서의 임원 임기</p> <p>제 49 조 <u>단체 기관 및 부서의 임원은 그 임기를 1 년으로 하되 재선할 수 있다. (단 부속기관, 임시위원회 등은</u></p>	<p>제 15 장 단체 기관 및 부서의 임원 임기</p> <p>제 46 조 <u>단체기관 임원 및 부서장은 그 임기를 1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단 부설기관 이사 및</u></p>

당회의 승인으로 예외로 한다.)	<u>임원, 임시위원회 등의 임원은 당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u>
제 12 장 단체, 기관의 부서의 사업 및 재정 보고 제 50 조 당회 직할기관, 교회부속기관, 부속단체는 최소 연 2 회(2 월과 10 월) 사업 및 재정보고를 서면으로 당회에 제출한다.	제 <u>16</u> 장 단체, 기관의 부서의 사업 및 재정 보고 제 <u>47</u> 조 <u>교회</u> 직할기관, 교회부속기관, 부속단체는 연 2 회(2 월과 10 월) 사업 및 재정보고를 서면으로 당회에 제출한다.
제 13 장 규약 수정 제 51 조 본 규약의 수정은 총회 재석 2/3 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안건은 총회 2 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u>17</u> 장 규약 수정 제 <u>48</u> 조
제 14 장 부칙 제 51 조 통상규례 (1)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성원이 되나 본 규약에 규정이 있는 회의는 예외로 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의 결의와 통상규례에 따른다. 제 52 조 운영내규 교회 전 기관 및 단체는 그 운영내규를 제정 및 수정하는대로 당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 53 조 규약 효력 발효 본 규약은 주후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u>18</u> 장 부칙 제 <u>49</u> 조 통상규례 제 <u>50</u> 조 운영내규 제 <u>51</u> 조 규약 효력 발효 본 규약은 주후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u>본 규약의 수정안은 2018년 11월 ___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u>
헌법 및 규약위원: 김상복목사 김영래장노 김창제장노 노운호교우 허종욱장노 홍춘택집사 황보철집사 1988년 11월()일 1차 수정 1989년 4월 16일 2차 수정 2010년 3월 28일 규약 제 7장 32조 2항 3차 수정	헌법 및 규약위원: 김상복 목사, 김영래 장로, 김창제 장로, 노운호 교우, 허종욱 장로, 홍춘택 집사, 황보철 집사 1988년 11월()일 1차 수정 1989년 4월 16일 2차 수정 2010년 3월 28일 규약 제 7장 32조 2항 3차 수정 <u>2018년 11월 일 4차 수정</u>